

#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3. 7.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2월 23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2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3월 7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선희

### 가.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 보훈청장’ 을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에 포함하고, 조항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서울지방 보훈청장’ 을 추가  
(안 제3조)
- 조항과 조문의 용어 순화 및 현행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정비  
(제명, 안 제1조 내지 제13조)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지역 통합방위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의 구성위원 조항에 지방 보훈청장을 추가하고, 주요 조항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현행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